#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84 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정동만·송언석·엄태영

최수진 • 정연욱 • 진종오

김형동 · 김선교 · 박형수

김태호 · 김종양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공동·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,

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·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,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·변 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·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 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가.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(안 제34조제2항)

나. 모바일 주민등록증(확인서비스)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·전달·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있도록 벌칙을 신설함(안 제37조제1항)

법률 제 호

###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"「전자서명법」의 규정"을 "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"으로 한다.

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3, 제 3호의4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3.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자
- 3의4.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하거나 혼 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・ 전달 또는 사용한 자
- 4의3.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34조(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제34조(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) ① (생 등의 전자문서 처리) ① (현행 과 같음) 략)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 용할 경우 인증 방법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) 등에 관하여는 「전 자서명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자정부법ㅣ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-----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3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7조(벌칙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의2. (생략)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의3.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 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 • 전달 또는 사용한 자 <신 설> 3의4.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4. · 4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

5. ~ 10. (생략) ② (생략)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 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 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 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·전 달 또는 사용한 자

4. · 4의2. (현행과 같음)

4의3.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록확인서비스에 의하여 생 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 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자

5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